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 제2022-791호)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22.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1. 근거법령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 안전점검 대상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 나.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 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20미터 이내 시설물 및 100미터 이내 사육하는 가축이 공사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 라. 천공기(10미터 이상), 향타 및 향발기, 타워크레인 중 하나 이상이 사용되는 공사
-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바. 그 외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참가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토목, 건축, 종합분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및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직무분야(토질지질, 토목구조, 상하수도, 토목시공, 토목품질관리 전문분야만 인정) 특급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또는 건축직무분야(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인정) 특급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24.7.22.) 경기, 충남,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에 소재 기관*

*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소재, 개인사업자는 관련서류 상 소재지

4. 접수신청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자 : 2024. 7. 22.(월) 09:00 ~ 8. 16.(금) 18:00

나. 제출서류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양식1) 1부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양식2) 1부

③ 안전점검 수행실적표(양식3) 1부

④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공고일부터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 충남,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에 소재한 업체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미비된 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시 실격 처리됨
라. 등록명부 공개: 홈페이지(2024.8.26.예정, <https://fipa.or.kr/>)

5. 기타 유의사항

-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는 다음 모집공고까지 유효하며, 모집공고 수행기관이 적거나,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모집기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지역 재공고합니다.
- 나.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내에서 지정하며, 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 다. 수행기관 지정은 추후 별도 공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며,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공지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정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라.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합니다.
-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바.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안전보건실(☎02-6098-08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